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46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9일

발 의 자 : 김용석·김제리·김화숙
이현찬·채인묵·김 경
정진술·봉양순·유 용
이광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공사장 주변 보호구역의 경우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점용 공사의 점용 도로에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추가적 보완조치를 교통소통 대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p> <p>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p> <p>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p>